

산학협력단 연구비 자체감사 규정

□ 제정 : 2018.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이라 한다) 연구비 중앙관리 행정체계의 확립과 합리적인 연구비 관리를 위해서 연구비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범위)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비와 관련된 포괄적 감사를 포함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연구비 자체감사는 일상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일상감사는 연구비 개별 지출 건에 대하여 시행하며, 연구비 집행 이전에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감사
2. 정기감사는 연구비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감사
3. 특별감사는 산단의 필요 또는 기타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히 실시하는 감사

제4조(감사의 수행주체) ① 일상감사 및 정기감사는 산단에서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수원과학대학교 사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는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는 산학협력단장의 결재를 득하여 산단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된 감사반이 담당한다.

제5조(감사의 방법) ① 일상감사는 연구책임자가 집행한 각종 카드결제 내역 및 계좌이체요구서 등을 수시 체크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즉시 회수처리하고 그 내역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 한다. 다만, 시안이 중대한 경우는 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는 서면감사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및 제재조치) ① 연구비 감사결과 연구비의 부적정 집행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에게 환수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상습적 또는 고의적 연구비 유용, 자료제출의 거부 및 지연제출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급제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사결과 보고)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는 감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내역을 포함한 연구비 감사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8-0-5 산학협력단 연구비 자체감사 규정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